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영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276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마약류·유해물품 등 은닉의심자에 대한 신체 검색 근거 명확화 (김영진의원안, 정부안)	2

I. 개요

1. 김영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276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영진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8. 21.

(3) 회 부 일 : 2025. 8. 2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관공무원이 「관세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및 관계 장부·서류를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마약류·유해물품 등 은닉 의심자에 대한 신체 검색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이 업무를 마약류, 유해물품 등의 밀반입 차단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여행자 등이 마약류 등을 신체에 은닉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한 후 이에 불응 시 세관공무원이 직접 신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5조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마약류·유해물품 등 은닉 의심자에 대한 신체 검색 근거 명확화 (김영진의원안, 정부안)

현 행	김영진의원안	정부안
□ 세관공무원의 물품 또는 운송수단등에 대한 검사(§265) ○ 명령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 등의 검사·봉쇄 가능 *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및 관계 장부 및 서류 ○ <신 설>	□ 마약류·유해물품 등 은닉 의심자에 대한 신체 검색 근거 신설 ○ (현행과 같음) ○ <u>세관 공무원의 마약류 등 은닉 의심자에 대한 신체 검색 근거 신설</u> - 검색 대상 : 여행자 승무원 그밖에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 검색 업무 범위: ① 수출입금지 물품에 대한 검사업무 등(§137의2①) ② 불법·불량 유해 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유치사유에 해당하는 물품을 휴대하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206①(2)라) - 검색 사유: 마약류, 무기류 및 사회안전 또는 국민 보건을 해칠 우려가	□ 마약류·유해물품 등 은닉 의심자에 대한 신체 검색 근거 신설 ○ (현행과 같음) ○ <u>세관 공무원의 마약류 등 은닉 의심자에 대한 신체 검색 근거 신설</u> - 검색장비 사용 검색 대상 : 여행자, 승무원, 그밖에 입국하는 자(이하 “여행자등”)의 휴대품 - 검색장비 사용 검사 업무 범위: ① 수출입금지 물품에 대한 검사업무 등(§137의2①) ② 불법·불량 유해 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유치사유에 해당하는 물품을 휴대하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206①(2)라)

현 행	김영진의원안	정부안
	있는 물품의 휴대 및 은닉 - 검색 방식 : 해당 물품의 제시 및 불응 시 신체 검색 가능	○ 신체검색 사유 - 검색장비 사용 검색 결과 여행자등이 다음 각호의 물품을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① 마약류 ②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총포 등 ③ 그 밖에 불법·불량·유해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 물품의 제시 요구 - 불응 시 신체검색 가능 ○ 여성에 대해서는 성년의 여성이 검사

* 김영진의원안 2025. 8. 21. 발의(의안번호 12276),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61)

□ 개정안은 마약류 등 유해물품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행자 등의 휴대품 및 휴대품 소지 여부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검색 결과 여행자 등이 마약류 등을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

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정부안은 수출입금지 물품 등의 검사 업무를 위해 여행자, 승무원 및 그밖에 입국하는자(이하 “여행자등”)를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검색하고, 검색 결과에 따라 여행자등이 마약류 등의 물품을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하며, 불응 시 신체 검색을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여성에 대한 신체 검색 시 성년의 여성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영진의원안은 동일한 내용이되, 신체 검색의 방법·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세관공무원이 현행법 또는 현행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물품 등을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¹⁾ 그러나 휴대품을 통한 마약류 등의 유해물품의 국내 반입이 증가하고, 해당 물품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에는 신체검색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① 휴대품 및 휴대품 소지 여부를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하고 ② 검색 결과에 따라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며 ③ 여성에 대하여는 신체검색

1) 「관세법」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세관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및 관계 장부·서류를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을 할 때에는 성년의 여성이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음.

□ ① (휴대품 및 휴대품 소지 여부를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는 업무의 규정) 개정안은 수출입금지 물품에 대한 검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여행자들의 휴대품 및 휴대품 소지 여부를 검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여행자들의 휴대품 및 휴대품 소지여부를 검색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²⁾ 검색장비를 활용한 검사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를 명확화하려는 입법취지가 있

2) 「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2661호)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등)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행자, 승무원 및 그 밖에 입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여행자등”이라 한다)의 휴대품 및 휴대품 소지 여부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다.

1. 제137조의2제1항 각 호의 검사업무
2. 제206조제1항제2호라목의 유치사유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업무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
 2.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
- 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이하 “마약류”라 한다)
- 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

제206조(유치 및 예치) ① 세관장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1. 유치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 가. 여행자의 휴대품
- 나.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
2. 유치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제226조에 따라 필요한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 나. 제96조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관세의 면제 기준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등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라. 불법·불량·유해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마. 「국세징수법」 제30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는 것으로 보임.

- ② (검색 결과에 따른 신체 검색 규정 신설) 개정안은 제2항에 따라 검색장비를 활용하여 여행자들을 검색한 결과, 여행자들이 마약류 등의 물품을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유해물품 반입을 방지하기 위한 신체 검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입법취지가 있음.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여행자들이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물품을 내보이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심되는 경우’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상황임. 특히 동조항은 신체 검색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고, 신체 검색은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형사절차의 강제수사와 동일한 수준의 관련 규정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형사소송법」 등의 유사입법례³⁾와 같이 문구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3)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둘째, 마약류 외 원료 물질, 임시마약류를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포괄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2024년 세법 개정을 통해 마약류 등의 수출입 제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마약류 외 원료물질, 임시마약류까지 수출입 제한 품목으로서 규정하였음.⁴⁾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는 신체 검색은 마약류를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만 가능할 뿐, 마약류 외 원료물질 및 임시마약류를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체 검색이 불가능한 상황임.

□ ③ (여성에 대한 성년 여성의 검사 의무) 개정안은 제3항에 따른 신체 검색 시 여성에 대해서는 성년 여성이 검사하도록 규정하여 여성 인권등의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동법 제301조의 신변 수색⁵⁾ 및 「형사소송법」 제141조제3항 등에 따른 입법례와 부합함.

이에 상기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문구를 다음과 같이 수

4) 「관세법」

제234조의2(마약류 등의 수출입 제한) 마약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료물질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임시마약류는 같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5) 「관세법」

제301조(신변 수색 등) ① 세관공무원은 범죄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물품을 피의자가 신변(身邊)에 은닉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내보이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변을 수색할 수 있다.

② 여성의 신변을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성을 참여시켜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41조(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① 신체의 검사에 관하여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성별, 나이, 건강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 아닌 사람의 신체검사는 증거가 될 만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수정의견]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 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생략)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 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행자, 승무원 및 그 밖에 입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여행자등”이라 한다)의 휴대품 및 휴대품 소지 여부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다.</u> <u>1.제137조의2제1항 각 호의 검사업무</u> <u>2.제206조제1항제2호라 목의 유치사유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업무</u> ③ <u>세관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검색한 결과 여행자등이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하</u>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 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 ----- ----- ----- ----- <u>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u> -----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u>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다.</u> <u>1. 마약류</u> <u>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u> <u>3. 그 밖에 불법·불량·유해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u> <u>④ 여성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체 검색을 할 때에는 성년의 여성이 하여야 한다.</u>	----- ----- -----. <u>1. 마약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료물질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임시마약류</u> 2.:3. (개정안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 한편, 김영진의원안은 신체 검색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신체검색은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관련 내용은

법률상에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현행 관세법 내 마약류 관련 규정 중 동법 제234조의2에 따르는 마약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료물질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임시마약류를 포괄하지 않는 규정은 원료물질 및 임시마약류를 포함하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⁶⁾

문 의 처

02)6788-5158

- 6) 개정안에 따른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는 검사업무 또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만을 포함할 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외 원료물질 및 임시마약류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및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를 포함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
2.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

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이하 “마약류”라 한다)

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